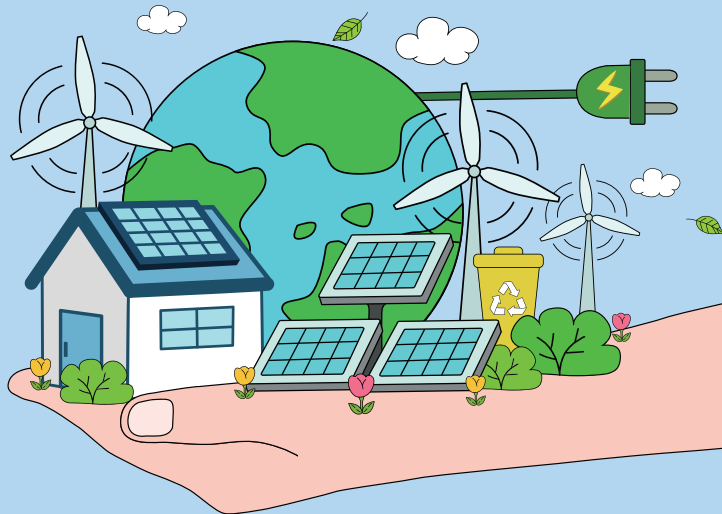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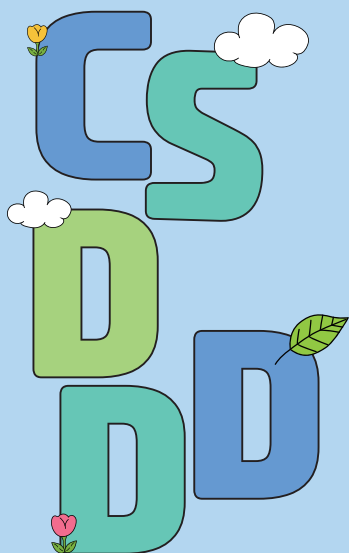


EU 수출기업을 위한 공급망 실사 지침

GUIDE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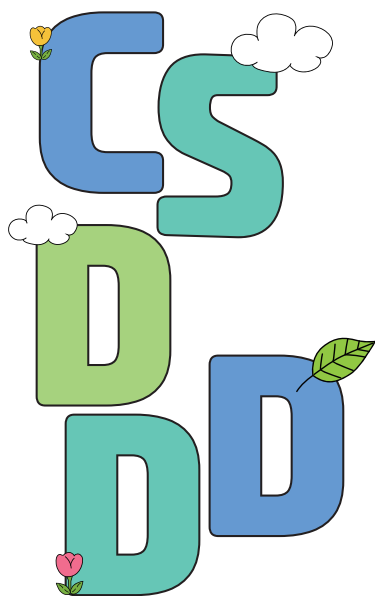


대한상공회의소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EU 수출기업을 위한 공급망 실사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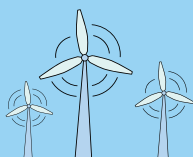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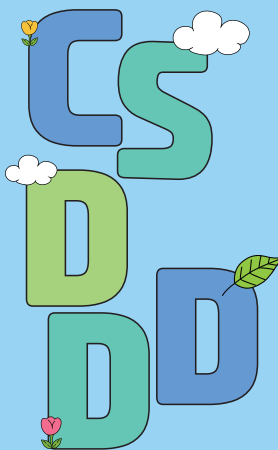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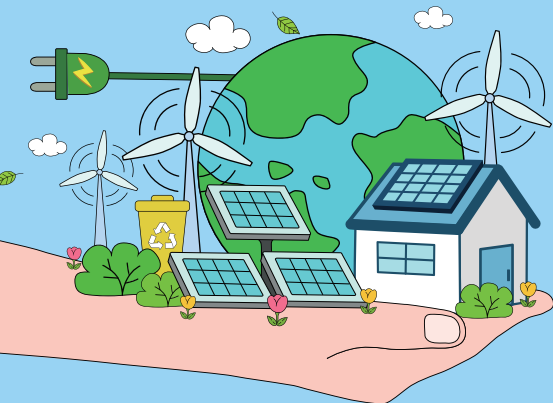
GUIDE BOOK



대한상공회의소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CONTENTS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의미와 도입 배경 5

1. 도입 배경 및 목적 7
2. 법안 추진 경과 9
3. 적용 대상 기업 및 적용 시점 11
4. 책임 및 제재 14

실무자를 위한 단계별 EU 공급망 실사 지침 이행가이드 16

1. EU 공급망 실사 지침 적용 대상 여부 진단 19
2. 실사 프로세스 정립 22
 - 1) 기업 정책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실사 내재화 24
 - 2) 부정적 영향의 식별 및 우선순위화 27
 - 3) 부정적 영향 예방, 완화 및 제거 31
 - 4) 모니터링 33
 - 5) 이해관계자 소통 34
 - 6) 구제조치 마련 35
3. 기후 전환 계획 36
4. EU 공급망 실사 지침과 국내법 비교 37

EU 공급망 실사 지침 대응을 위한 자가 진단 Checklist 42

1. 자가 진단 Checklist 개발 배경 45
2. EU 공급망 실사 지침 요구사항 이행 자가 진단 Checklist 45
3. 인권 및 환경 실사 Checklist 51
 - 1) 인권 실사 Checklist 51
 - 2) 환경 실사 Checklist 58

부록 62

1. EU 공급망 실사 지침 조항 표 64
2. EU 공급망 실사 지침 부속서 67
3. EU 공급망 실사 유관 법령 동향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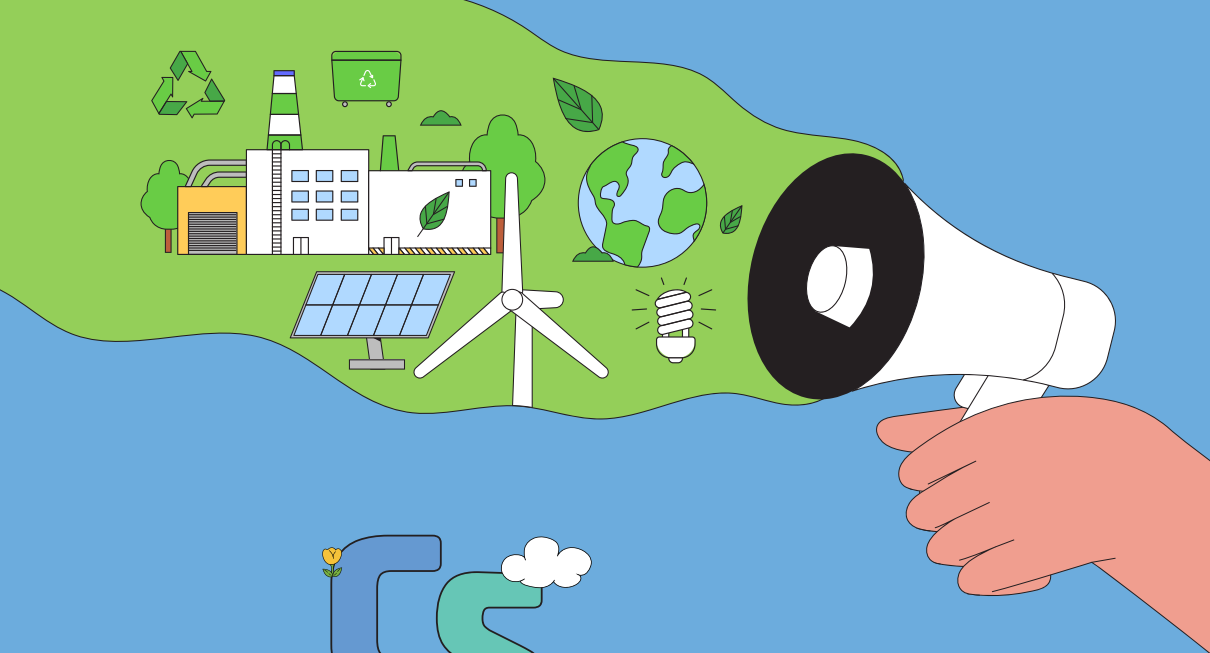
Part

1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의미와 도입 배경

1. 도입 배경 및 목적
2. 법안 추진 경과
3. 적용 대상 기업 및 적용 시점
4. 책임 및 제재





CS DD 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Part 1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의미와 도입 배경

part. 1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의미와 도입 배경

1. 도입 배경 및 목적

- 실사(Due Diligence)란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파생된 부정적인 영향(인권 및 환경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기업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져 감에 따라 이를 관리하기 위해 OECD는 2018년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 지침」을 발표하였고, 실사 이행에 대한 국제적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국내에서는 이미 2014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급망 실사의 주요 요소(인권경영 체크 리스트)를 공기업에 적용하도록 권고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했으며, 2022년부터는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을 적용하여 공공영역에서의 공급망 실사를 정착시켜왔습니다.¹⁾
- 민간기업 역시 안정적인 조달 공급망을 구축하고, 기업 가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사 실사 체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 더불어, 최근 ESG 경영의 중요성 또한 확대되면서 공급망 실사에 대한 책임은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시류를 반영하여, 유럽 역시 다양한 실사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 영국의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2015)을 시작으로 프랑스에서는 기업에 대한 인권 및 환경 실사를 강제하는 「기업 실사 의무 법」(2017)을 최초로 제정하는가 하면, 네덜란드 「아동 노동 실사 의무 법」(2019)), 독일 「공급망 실사법」(2021)) 등 일부 EU 회원국에서 공급망 실사와 관련된 국내법이 입법²⁾ 되었습니다.
- 그러나 국가별 법률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어 다양한 회원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혼란을 야기하곤 했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웹진 "공급망 실사란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2023)

2) 자세한 국내법 현황은 Part 2의 4번 참고

- 이에 EU는 유럽 내에서 공급망 실사와 관련된 공통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지침(Directive)을 마련하여 EU의 역내·외 기업 모두에게 동일한 실사 지침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렇게 탄생한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기업의 자체 운영 뿐만 아니라 공급망을 포함한 주요 비즈니스 관계(chain of activities) 내에서 아동 노동, 강제 노동, 비인도적 대우, 오염, 유해 물질 등 인권과 환경에 대한 실사 수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에서 요구하는 실사 항목

인 권

생명권 존중, 비인도적 대우,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종교의 자유, 근로조건, 아동노동, 강제노동,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등

환 경

생물다양성, 토양, 폐기물, 물 소비, 오염물질 배출, 오존층 보호 등

Source: 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2024) (요약/EY한영)

- 국내에서도 2023년 8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급망 실사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공급망 실사 의무화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EU 공급망 실사 지침에 대한 대비와 함께 국내 입법 상황 또한 면밀히 주시하여, 공급망 실사와 관련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EU 집행규범의 유형

EU 집행규범은 EU 창설조항(Treaty on European Union) 제 189 조에 따라, 규정(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 권고 및 의견(Recommendation and Opinion)으로 구분됩니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EU 전체에 직접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규범인 규정(Regulation)과는 달리, 전반적인 목표와 제정 시한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개별국에게 위임하는 지침(Directive)의 형태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각 회원국은 EU 공급망 실사 지침에 대한 공동 목표를 기반으로, 개별국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국내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집행규범 유형	내용
규정 (Regulation)	전체 EU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EU 규범(별도의 국내법적 전환절차 없이 각국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짐)
지침 (Directive)	이사회가 달성해야 할 전반적인 목표와 제정 시한만을 제시함(개별 회원국은 해당 지침을 기반으로 국내법 제정 필요)
결정 (Decision)	특정 사안(경쟁정책 집행, EU 기금 교부 등)에 대해 권리 또는 의무를 부여하는 공동체 규범(별도의 국내법적 절차 없이 직접 적용)
권고 및 의견 (Recommendation and Opinion)	공동정책의 목표 제시 및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 발표 목적으로 활용

2. 법안 추진 경과

- 일반적인 EU의 입법 절차는 EU 내 입법기관인 EU 집행위원회, 유럽 의회, EU 이사회 간 협상을 통해 법안에 대한 잠재적 합의를 도출한 뒤, 유럽 의회와 EU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법률이 채택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이번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과 환경에 관련된 부정적 영향의 식별과 해결 의무를 기업에 부여할 뿐만 아니라, 역내·외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법안이라는 점에서 EU 입법기관 간의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2022년 2월, EU 집행위원회가 EU 공급망 실사 지침 법률안 초안을 제안한 이후, 지속적인 협상을 거쳐 2023년 12월 EU 집행위원회-유럽 의회-EU 이사회 간 3자 협의(Trilogue)를 타결하며 잠정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 그러나 독일을 비롯하여 이미 공급망 실사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우려하여 기권 방침을 표명하면서, 2024년 2월 EU 이사회가 잠정 합의안을 부결시켜 EU 공급망 실사 지침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이후 EU 이사회 의장국이었던 벨기에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협상이 재개되었으며, 규제의 적용 기준을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 합의안을 수정하여 2024년 3월 EU 이사회 의 승인을 끌어내었습니다.
- 해당 타협안은 4월과 5월에 각각 유럽 의회와 EU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7월 5일 EU 관보(EU Official Journal)에 EU 회원국별 언어로 번역되어 게재되었으며, 게재 후 20일 후인 7월 25일 발효되었습니다.
- 이제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발효 이후 2년간 개별 회원국 내에서 국내법 전환절차를 거쳐 기업에 실제 적용될 예정입니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 법안 추진 경과



* 3자 협의(Trilogue): EU 집행위원회, EU 이사회, 유럽 의회 / Source: EY한영

3. 적용 대상 기업 및 적용 시점

-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EU 역내 및 역외 기업에 모두 적용되며, 지침의 적용 기준은 일반 기업과 로열티 수익 기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 (EU 역내 기업)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① 일반기업은 평균 임직원 수가 1,000명을 초과하면서 연간 전 세계 순매출액이 4.5억 유로를 초과할 때, ② 로열티 수익 기업은 로열티로 인한 수익이 2,250만 유로를 초과하면서 전 세계 순매출액이 8,000만 유로를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 (EU 역외 기업) 전전년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① 일반 기업은 EU 역내 순매출액이 4.5억 유로를 초과할 때, ② 로열티 수익 기업은 로열티로 인한 수익이 2,250만 유로를 초과하면서 EU 역내 순매출액이 8,000만 유로를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 그러나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일지라도, 최종 모기업(Ultimate parent company)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모기업으로부터 실사를 요구 받게 되므로, 기업은 반드시 실사 적용 범위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 적용 대상 기업

EU 역내 기업		EU 역외 기업	
일반 기업	로열티 수익 기업	일반 기업	로열티 수익 기업
하기 기준 모두 충족 ① 평균 임직원 수 1,000명 초과 ② 전 세계 순 매출액 4.5억 유로 초과	하기 기준 모두 충족 ① 로열티로 인한 수익 2,250만 유로 초과 ② 전 세계 순 매출액 8,000만 유로 초과	하기 기준 충족 ① EU 역내 순 매출액 4.5억 유로 초과	하기 기준 모두 충족 ① 로열티로 인한 수익 2,250만 유로 초과 ② EU 역내 순 매출액 8,000만 유로 초과
직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전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Source: 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2024) (요약/EY한영)

- EU는 공급망 실사 지침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점을 고려하여, 지침이 발효되는 시점인 2024년을 기준으로, 3~5년의 유예기간을 통해 기업이 EU 공급망 실사 지침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제시합니다.
- 이에, 3년 뒤인 2027년부터 EU 역내 법인 소재 여부, 기업 규모(임직원 수,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라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 적용 시점

적용 시점		2027년	2028년	2029년
적용 대상	역내 기업	하기 2개의 기준 모두 충족 2026년 임직원 수 5,000명 및 전 세계 순 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2025년도 임직원 수 1,000명 및 전 세계 순 매출액 4.5억 유로 초과	하기 2개의 기준 모두 충족 2026년 임직원 수 3,000명 및 전 세계 순 매출액 9억 유로 초과 2025년도 임직원 수 1,000명 및 전 세계 순 매출액 4.5억 유로 초과	다음 유형 중 한 가지에 해당 2027년, 2028년 모두 임직원 수 1,000명 및 전 세계 순 매출액 4.5억 유로 초과 2027년, 2028년 모두 로열티 수익 2,250만 유로 초과 및 전 세계 순 매출액 8,000만 유로 초과하는 로열티 수익 기업
	역외 기업	하기 2개의 기준 모두 충족 2026년 EU 역내 순 매출액 4.5억 유로 초과 2025년 EU 역내 순 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하기 2개의 기준 모두 충족 2027년 EU 역내 순 매출액 4.5억 유로 초과 2026년 EU 역내 순 매출액 9억 유로 초과	다음 유형 중 한 가지에 해당 2027년, 2028년 모두 EU 역내 순 매출액 4.5억 유로 초과 2027년, 2028년 모두 로열티 수익 2,250만 유로 초과 및 EU 역내 순 매출액 8,000만 유로 초과하는 로열티 수익 기업
공시 연도		2028년	2029년	2030년

Source: 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2024) (요약/EY한영)

[참고] EU 역내 기업과 EU 역외 기업의 구분

EU 회원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의 경우 EU 역내 기업으로 구분되며, 제3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의 경우 EU 역외 기업으로 구분됩니다.

예시 1 한국 기업이 EU 내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은 EU 역내 기업으로 분류됨

예시 2 EU 역내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을 납품하는 한국 기업은 역외 기업으로 분류됨

[참고] EU 역내 기업의 임직원 수 산정 기준

EU 역내 기업의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 수는 연평균 임직원 수를 기준으로 하며, OECD에서 사용하는 전일제 환산(FTE, Full time Equivalent)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산식에는 정규직 임직원 뿐만 아니라, 기간제(part-time) 근로자, 파견직 근로자, 기타 비정규직 근로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전일제 근로자 대비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파견직 근로자는 근로자가 기존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타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유럽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의 근로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임직원 수에 포함됩니다.

예) FTE 근로시간 산정 방법(1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FTE=근로자 주당 근로시간/정규직 근로자의 주당 근무시간

직원 A: 주 40시간 근무 ▶ $40/40 = 1$ FTE

직원 B: 주 20시간 근무 ▶ $20/40 = 0.5$ FTE

직원 C: 주 30시간 근무 ▶ $30/40 = 0.75$ FTE

∴ 총 3명의 직원이지만, 1주 간 2.25명의 FTE로 환산됨

4. 책임 및 제재

- EU 공급망 실사 지침 이행 의무를 지닌 기업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전 세계 순매출액 기준 최소 5%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출액의 기준은 관할 당국이 벌금 부과 결정을 내린 연도의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그룹사의 경우 최종 모회사가 보고한 연결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만약 기업이 주어진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업명과 위반 내용을 담은 공개 성명서가 발표되어 기업의 평판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더불어, 기업이 EU 공급망 실사 지침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특정 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입은 주체가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를 입은 당사자 뿐 아니라 인권 단체, 환경 단체,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은 5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 협력사의 단독 귀책 사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에 대한 책임 의무가 발생 하지는 않지만, 해당 손해에 협력사와 공동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연대 하에 배상 책임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 그러나 이는 민사상의 책임에만 국한되는 사항으로 손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발생 하지 않더라도, EU 공급망 실사 지침 의무 위반에 따른 벌금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주요 비즈니스 관계(Chain of activities) 전반에 걸쳐 실사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EU 공급망 실사 지침 유관 법령과의 관계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과 상호 보완되는 지침이며, CSRD 외에도 EU 배터리 규정(New Battery Regulation), 산림 전용 방지 규정(Deforestation-free products Regulation), 분쟁 광물 규정(Conflict Minerals Regulation) 등 다른 EU의 법률*들과 상호 연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EU 공급망 실사 지침이 다른 EU 법률들과 충돌하는 경우, 충돌하는 범위 내에서 더욱 광범위하거나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이 우위를 가지게 되므로, EU 공급망 실사 지침을 포함한 유관 법령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EU 공급망 실사 지침과 연관된 EU 주요 법령의 세부 내용은 부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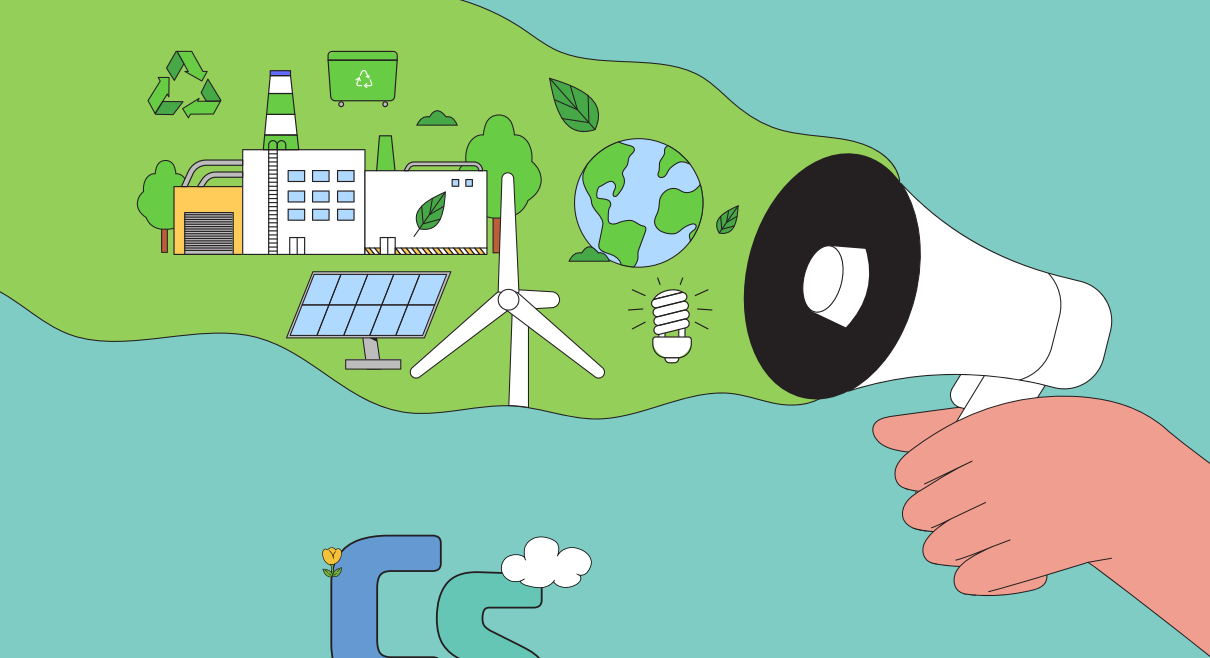
Part

2

실무자를 위한 단계별 EU 공급망 실사 지침 이행 가이드

1. EU 공급망 실사 지침 적용 대상 여부 진단
2. 실사 프로세스 정립
 - 1) 기업 정책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실사 내재화
 - 2) 부정적 영향의 식별 및 우선순위화
 - 3) 부정적 영향 예방, 완화 및 제거
 - 4) 모니터링
 - 5) 이해관계자 소통
 - 6) 구제조치 마련
3. 기후 전환 계획
4. EU 공급망 실사 지침과 각 회원국별 국내법 비교





CS DD 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Part 2

실무자를 위한 단계별 EU 공급망 실사 지침 이행 가이드

part. 2

실무자를 위한 단계별 EU 공급망 실사 지침 이행 가이드

1. EU 공급망 실사 지침 적용 대상 여부 및 시점 진단

-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2024년 발효 이후 3~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기업의 EU 역내 법인 소재 여부, 기업 규모(임직원 수,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라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 이에 따라 각 기업은 EU 공급망 실사 지침 대상 여부를 우선적으로 파악한 후 지침이 적용되는 시점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각 기업 담당자가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적용 대상 여부와 이행 시점을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Checklist를 마련하였습니다.

* 본 Checklist는 실무자들을 위한 참고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 적용 대상 및 시점 진단 Checklist

Step 1

기업 소재지 확인

1. EU 회원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입니까?

예 → Step 2-1로 이동

아니오 → Step 2-2로 이동

Step 2-1

(EU 역내 기업) 적용 시점 확인

1. 프랜차이즈 계약 또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입니까?

예 → 5번 문항으로 이동

아니오 → 2번 문항으로 이동

2. 2025년 전 세계 순 매출액이 4.5억 유로를 초과하고, 임직원 수는 1,000명을 초과합니까?

예 → 2-1번 문항으로 이동

아니오 → 3번 문항으로 이동

2-1. 2026년 전 세계 순 매출액이 15억 유로를 초과하고, 임직원 수는 5,000명을 초과합니까?

예 → 2027년 지침 적용 대상으로, 2028년 실사 보고서 공시 필요

아니오 → 3번 문항으로 이동

3. 2026년 전 세계 순 매출액이 4.5억 유로를 초과하고, 임직원 수는 1,000명을 초과합니까?

예 → 3-1번 문항으로 이동

아니오 → 4번 문항으로 이동

3-1. 2027년 전 세계 순 매출액이 9억 유로를 초과하고, 임직원 수는 3,000명을 초과합니까?

예 → 2028년 지침 적용 대상으로, 2029년 실사 보고서 공시 필요

아니오 → 4번 문항으로 이동

4. 2027, 2028년 모두 전 세계 순 매출액이 4.5억 유로를 초과하고, 임직원 수는 1,000명을 초과합니까?

예 → 2029년 지침 적용 대상으로, 2030년 실사 보고서 공시 필요

아니오

5. 2027년, 2028년 모두 로열티 수익이 2,250만 유로를 초과하고, 전 세계 순 매출액이 8,000만 유로를 초과합니까?

예 → 2029년 지침 적용 대상으로, 2030년 실사 보고서 공시 필요

아니오

Step 2-2

(EU 역외 기업) 적용 시점 확인

1. 프랜차이즈 계약 또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입니까?

예 → 5번 문항으로 이동

아니오 → 2번 문항으로 이동

2. 2025년 EU 역내 순 매출액이 15억 유로를 초과합니까?

예 → 2-1번 문항으로 이동

아니오 → 3번 문항으로 이동

2-1. 2026년 EU 역내 순 매출액이 4.5억 유로를 초과합니까?

예 → 2027년 지침 적용 대상으로, 2028년 실사 보고서 공시 필요

아니오

3. 2026년 EU 역내 순 매출액이 9억 유로를 초과합니까?

예 → 3-1번 문항으로 이동

아니오 → 4번 문항으로 이동

3-1. 2027년 EU 역내 순 매출액이 4.5억 유로를 초과합니까?

예 → 2028년 지침 적용 대상으로, 2029년 실사 보고서 공시 필요

아니오

4. 2027, 2028년 EU 역내 순 매출액이 4.5억 유로를 초과합니까?

예 → 2029년 지침 적용 대상으로, 2030년 실사 보고서 공시 필요

아니오

5. 2027년, 2028년 모두 로열티 수익이 2,250만 유로를 초과하고, EU 역내 순 매출액이 8,000만 유로를 초과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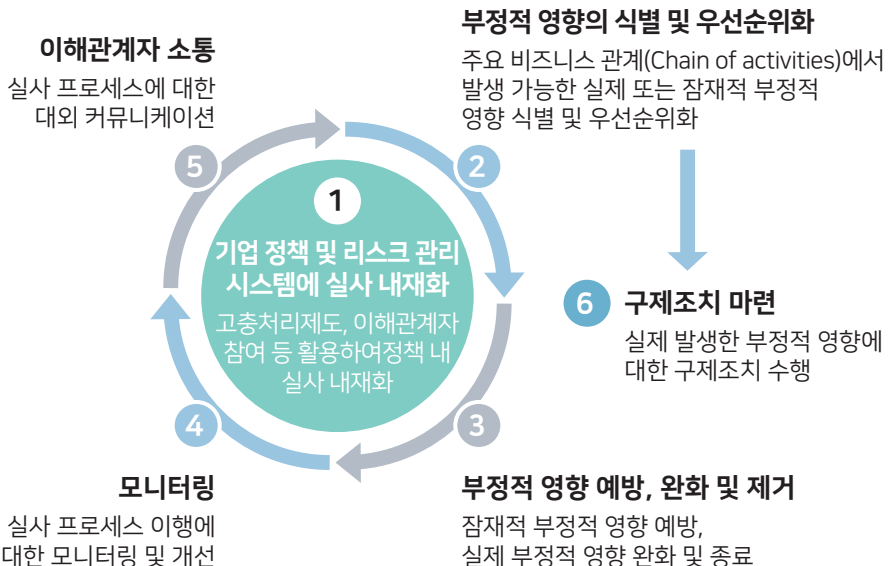
예 → 2029년 지침 적용 대상으로, 2030년 실사 보고서 공시 필요

아니오

2. 실사 프로세스 정립

- EU 공급망 실사 지침이 적용되는 기업들은 자회사 및 협력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또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실사 체계를 수립하고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 동 지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사 체계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과 「OECD의 책임있는 비즈니스를 위한 실사 지침」(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에 기업은 OECD의 실사 절차를 참고하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EU 공급망 실사 지침에서 요구하는 실사 이행 의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OECD 가이드라인 기반의 실사(Due Diligence) 체계



Source: OECD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2018), 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2024) (재가공/EY한영)

단계	단계별 주요 수행 내용
기업 정책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실사 내재화	- 기업의 정책과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실사 이행 의무 내재화 (고위 경영진에게 실사 책임 부여 등) - 협력사 및 기타 비즈니스 관계 내, 책임 있는 기업 행동 원칙을 통합(협력사 행동강령 제정, 계약 조건 내 관련 내용 포함 등) - 의사 결정 과정 내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소통 채널 마련 - 부정적 영향을 받은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고충처리제도 마련
부정적 영향의 식별 및 우선순위화	- 자체 운영, 공급망을 포함하여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의 범위 식별 - 부정적 영향(실제적·잠재적)을 식별하고, 심각도와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 결정
부정적 영향 예방, 완화 및 제거	- 우선순위화 된 부정적 영향을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실행(부정적 영향 예방 및 완화 활동 지속 수행,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중단 등)
모니터링	- 식별, 예방, 완화 및 개선 조치 이행에 대한 효과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기존 실사 프로세스 개선
이해관계자 소통	- 실사 정책, 프로세스, 부정적 영향 식별 및 개선을 위해 수행한 활동과 결과를 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
구제조치 마련	- 피해를 입은 주체를 대상으로 구제조치 마련

1) 기업 정책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실사 내재화

- 기업은 자체 활동 뿐만 아니라 자회사 및 협력사를 포함한 공급망과 관련된 정책 및 위험 관리 시스템에 실사 의무를 통합하고, 실사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실사 정책에는 ① 실사에 대한 회사의 접근 방식, ② 회사 및 자회사와 직·간접적인 비즈니스 파트너가 준수해야 하는 행동강령, ③ 행동강령 준수 여부 확인 및 실사 이행을 위한 프로세스를 내재화 함으로써 EU 공급망 실사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각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며, 실사 정책은 최소 24개월마다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 중대한 변경 사항: 신규 사업 영역 또는 신규 제품 출시, 신규 지역에서의 운영 개시, 구조조정 또는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 구조의 변화 등

[참고] 협력사 관리 정책 포함 내용 예시

구분	내용	세부 내용
협력사 식별 및 선정	협력사 간 관계	원료공급사, 위탁생산업체 등
	협력사 선정 기준	구매액, 신용등급 평가, 자사 선정 시스템을 통한 기준치 통과 등
협력사 관리 영역 설정	인권	강제노동, 아동노동, 근로시간, 임금 및 복리후생, 인도적 대우, 차별 및 괴롭힘 금지, 결사의 자유 등
	환경	환경 허가 및 보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유해 물질, 물 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 소음, 오염 방지 및 자원 절감, 폐기물 등
실사 주기 및 평가 방법	실사 수행 주기	최소 12개월마다 수행 등
	평가 방법	제3자 전문기관 또는 산업 이니셔티브 Tool을 활용 평가 진행 등
협력사 개선 요구	개선 방안 지원	협력사 개선 이행 현황 점검 및 교육, 컨설팅 제공 등

- 실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기업은 동 실사 지침의 요구사항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실사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만약 이해관계자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재수렴하는 등의 추가적인 협의를 실사 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실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기업은 이해관계자들이 정보 및 의견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복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참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기업의 접근 방법

기업은 EU 공급망 실사 지침 이행의 모든 단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전략 및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별로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할 수 있으며, 노사협의회, 설문조사, 고객센터, 포럼 및 간담회 개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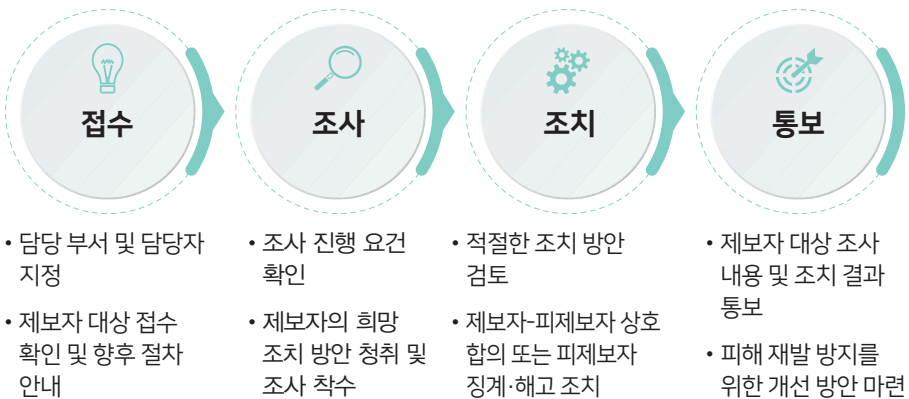
이해관계자	주요 소통 채널
임직원	노사협의회, 경영설명회, 타운홀미팅, 사내소통 채널, 고충처리제도, 상담센터 등
협력사	파트너 협의회, 핫라인, 사이버 신문고, 협력사 포털, 초청 간담회, 찾아가는 방문간담회 등
고객	고객 설문조사, 서비스센터, 고객 상품검증단 등
주주·투자자	주주총회, 투자자 미팅 및 포럼 등
정부	정기적 미팅 및 포럼 등
지역사회·NGO	지역사회 간담회, NGO 간담회, 환경영향평가 등

- 기업은 자체 운영 및 공급망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실제적·잠재적)에 대해 개인(임직원, 협력사, 고객 등), 노동조합, 시민 사회 등으로부터 고충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한 고충 처리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 고충처리제도는 자체 운영, 제3자 또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활용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고충처리제도는 비밀 보장, 보복 방지, 투명성·접근성을 유지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고충처리제도를 통해 불만을 제출한 이해관계자에게는 제기한 고충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고충 처리 상황을 통보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고충과 관련되어 적절한 수준의 대표자와 논의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참고] 고충 접수 채널과 고충처리 절차

기업은 온/오프라인 고충처리 시스템, 핫라인, 근로자 대표기구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고충을 접수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충 접수 채널을 통해 고충이 접수되면, 고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을 검토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보자에게 해당 결과를 공유해야 합니다. 이후 적절한 조치방안을 통해 제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시행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충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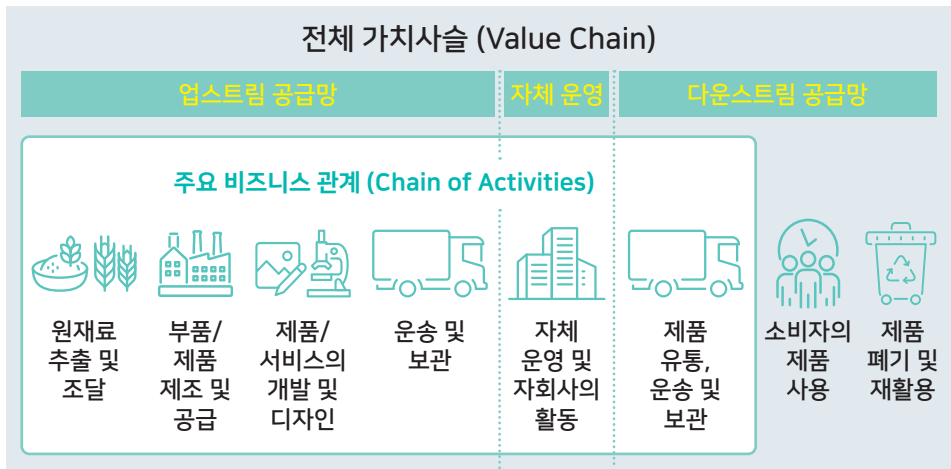
2) 부정적 영향의 식별 및 우선순위화

• 실사범위 설정

- 기업은 가치사슬(Value Chain)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기에 앞서, 실사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 EU 공급망 실사 지침에서는 실사의 범위*를 주요 비즈니스 관계(Chain of activities)로 제시하고 있으며, 활동 사슬은 전체 가치사슬 중에서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업스트림(Upstream)²⁾과 다운스트림(Downstream)³⁾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동 지침에서 요구하는 다운스트림의 실사 범위에는, 소비자의 제품 사용 및 제품의 폐기·재활용 단계가 제외됩니다.

* 서비스·금융 산업의 경우, 업스트림 공급망만을 실사 범위에 포함

EU 공급망 실사 지침 적용 대상 범위



Source: focusright "CSDDD: new EU rules to level the playing field for large companies'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2024) (요약/EY한영)

- 2) 업스트림 : 기업을 기점으로 물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를 통칭(예: 원재료 추출 및 조달, 부품/제품 제조 및 공급,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디자인, 운송 및 보관을 포함한 기업의 구매·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
- 3) 다운스트림 : 기업을 기점으로 최종 소비자와 가까운 주체를 통칭(예: 제품의 유통, 소비자의 사용, 제품의 폐기 및 재활용 등)

[참고] 주요 비즈니스 관계(Chain of activities) 범위 설정 및 관리

협력사 범위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3단계 절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협력사의 범위 설정(예: 최종 납기 자재 납품 대상 협력사를 기준으로 해당 기간 내 거래한 협력사, 완제품에서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 등) ② 실사 관리 매뉴얼 제작 ③ 협력사 선정 및 제외 사유 발표

주요 비즈니스 관계(Chain of activities) 관리



• 인권 환경 리스크 식별

- 개별 기업의 특성과 현황에 맞는 부정적 영향(실제적·잠재적)을 식별하기 위해, 주요 비즈니스 관계(Chain of activities)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인권 환경 리스크에 대한 Pool을 구축해야 합니다.
- 각 회사의 현황에 맞는 리스크 Pool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동 법의 부속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을 포함하여, UNGP 가이드라인, 산업 이니셔티브(EcoVadis, RBA 등), 국내 외 법/규제(근로기준법 등) 등 다양한 근거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후, 주요 비즈니스 관계에서 각 인권·환경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위치를 식별해야 합니다.

[참고] EU 공급망 실사 지침에서 다루는 인권 및 환경 리스크(실사 항목)

부속서 Part 1 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권 실사 항목	부속서 Part 2 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 실사 항목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	생물다양성 보호
차별 및 괴롭힘 금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 제한
근로조건	수은 첨가제품 사용 및 수출입 제한
적절한 근로 공간 제공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생산 및 사용 제한
아동노동 금지	유해화학물질의 수출입 제한
강제노동 금지	오존층 보호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폐기물 수출입 제한
개인정보 침해 금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환경 악화를 초래하는 행위 금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보호
토지 및 자원이용에 대한 지역사회 권리 보장	선박 운영에 따른 해양 오염 방지

• 부정적 영향의 우선순위 평가

- 리스크 Pool을 기반으로 개별 기업에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실제적·잠재적)이 식별되었다면, 해당 영향들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 동 지침에서는 부정적 영향(실제적·잠재적)에 대한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해, ① 규모(Scale), 범위(Scope), 회복 불가능성(Irremediable character)의 함수로 표현되는 심각성(Severity)과 ② 발생가능성(likelihood)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에, 심각성과 발생가능성의 관점에서 개별 부정적 영향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한 뒤, 부정적 영향의 우선순위를 도출해야 합니다.
- 이러한 접근을 통해 기업은 가장 중대한 부정적 영향부터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합리적인 시간 안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영향의 우선순위 평가를 위한 기준

구분		설명
심각성 (Severity)	영향의 규모 (Scale)	인권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크기
	영향의 범위 (Scope)	부정적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수, 지역 범위 등
	회복불가능성 (Irremediable Character)	부정적 영향을 받기 전과 동일한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데 투입되는 자원, 시간 등
발생가능성 (Likelihood)		부정적 영향의 발생 빈도

Source: OECD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2018)

[참고] 부정적 영향의 평가 기준 예시

점수	영향의 규모 (Scale)	영향의 범위 (Scope)	회복불가능성 (Irremediable Character)	발생가능성 (Likelihood)
5점	국제 기관·기구로부터의 제재나 권고, 또는 국제 뉴스 미디어에서 기사화	전 세계적 영향	향후 30년 이내 회복 불가능하며, 부정적 영향은 대체로 비가역적임	향후 1년간 80% 이상 확률로 발생, 또는 최근 1년 이내 발생함
4점	권역 내 기관·기구로부터의 제재나 권고, 또는 권역 뉴스 미디어에서 기사화	소속 권역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	회복을 위한 10년 이상의 활동 및 투자를 포함한 장기적 대응 필요	향후 1년간 60~80% 확률로 발생, 또는 최근 3년 이내 자주 발생함

점수	영향의 규모 (Scale)	영향의 범위 (Scope)	회복불가능성 (Irremediable Character)	발생가능성 (Likelihood)
3점	국가 기관·국내 기구로부터의 제재나 권고, 또는 국내 뉴스 미디어 에서 기사화	소속 국가 (한국) 전반에 대한 영향	회복을 위한 5년 이상의 활동 및 투자를 포함한 중기적 대응 필요	향후 1년간 40~60% 확률로 발생, 또는 향후 3년 이내 발생 가능성
2점	상위 행정 단위 (도)로부터의 제재나 권고, 또는 지역 뉴스 미디어 에서 기사화	사업장 소재 상위 행정 단위(도)에 대한 영향	회복을 위한 1년 이상의 활동 및 투자를 포함한 단기적 대응 필요	향후 1년간 20~40% 확률로 발생, 또는 향후 5년 이내 발생 가능성
1점	지자체로부터의 제재나 권고, 또는 마이너 채널 미디어에서 기사화	사업장 소재 지(시·군)에 대한 영향	발생 직후 1년 미만의 대응으로 도 충분히 회복 가능	향후 1년간 20% 미만 확률로 발생, 또는 향후 5년 이내 발생 가능성 미미

3) 부정적 영향 예방, 완화 및 제거

- 기업은 부정적 영향(실제적·잠재적)을 발생시킨 주체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이를 완화 또는 제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적절한 조치란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협력사에게 개선 계획 수립과 이행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해당 조치에는 정량적·정성적 요소에 대한 점검과 함께 금융·비금융 지원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업은 공급망을 대상으로 계약상 보증을 체결하여 기업의 행동강령과 예방 조치계획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은 직접 협력사와 계약상 보증을 체결한 후, 직접 협력사가 하위 협력사와 동일한 계약상 보증을 체결하도록 권장 함으로써, 단계적으로 모든 공급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협력사와 계약상 보증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증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EU 집행위원회는 2027년 1월까지 계약상 보증의 모델과 관련된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기업은 부정적 영향에 대한 완화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산업 이니셔티브(RBA 등)를 활용하거나 제3자 검증을 통해 조치 이행의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협력사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도 부정적 영향을 예방 또는 완화할 수 없는 경우, EU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해당 협력사와 거래 관계를 중단하거나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협력사와의 거래 관계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지속하여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의 크기와 거래를 중단하였을 때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의 크기를 비교하여야 합니다.
- 만약 거래 관계를 중단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의 크기가 더욱 클 경우 거래 관계를 중단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해당 사유를 감독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 협력사와의 거래 관계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기업은 거래 관계 중단에 따른 영향을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대체 공급 업체 탐색 등)를 마련해야 하며, 해당 협력사에 거래 관계 중단에 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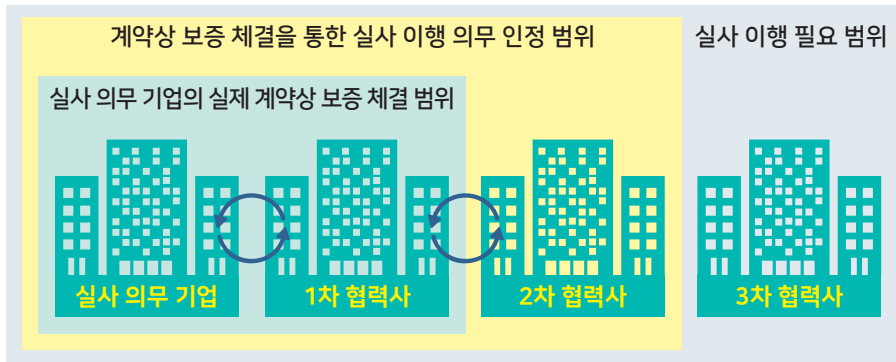
[참고] 직접 협력사(Direct Business Partner)와 간접 협력사(Indirect Business Partner)

구분	협력사의 범위
직접 협력사 (Direct Business Partner)	기업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1차 협력사가 해당
간접 협력사 (Indirect Business Partner)	직접 협력사에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사로, 2차, 3차 협력사 등이 해당

[참고] 계약상 보증(Contractual Assurances)

계약상 보증(Contractual Assurances)이란 기업과 직접적인 협력사가 기업의 행동 강령과 예방 조치 계획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공급망에 해당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실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EU 공급망 실사 지침에서는 실사 의무기업의 직접 협력사가 하위 공급사들과 앞선 계약에 상응하는 계약상 보증을 체결할 시, 실사 의무를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사 의무 기업은 직접 협력사(1차 협력사)와 계약상 보증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직접 협력사(1차 협력사)가 하위 협력사와 동일한 계약상 보증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보증을 통한 공급망 실사 의무 준수



Source: 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2024) (요약/EY한영)

4) 모니터링

- 모니터링이란 수립한 계획이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계획 대비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 EU 공급망 실사 지침에서는 적절한 평가 지표를 통해 실사 이행 여부, 시행된 개선 조치의 적절성 및 효과성에 대해 최소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단, 회사의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했거나 새로운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합니다.

* 신규 사업 영역 또는 신규 제품 출시, 신규 지역에서의 운영 개시, 구조조정 또는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 구조의 변화 등

5) 이해관계자 소통

- EU 공급망 실사 지침 대상 기업은 연1회 자사의 웹사이트에 실사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 보고서는 해당 회원국에서 통용되는 EU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작성하거나,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인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 EU 역외 기업은 역내의 공식 대표자(대리인)의 연락처 정보(이름,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를 함께 공시해야 합니다.
- 대상 기업은 2029년부터 유럽단일접속지점(ESAP, European Single Access Point)에도 기업의 실사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에 적용 대상인 기업은 CSRD와 EU 공급망 실사 지침 간 중복 공시를 피하기 위해 EU 공급망 실사 지침 공시 의무가 면제됩니다.

[참고] 유럽단일접속지점(ESAP, European Single Access Point)

유럽단일접속지점(이하 ESAP)은 EU 역내 ESG 및 지속가능한 금융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여 공시하는 전자 공시 플랫폼으로, 투자자들이 해당 정보를 투자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등장한 입법안입니다. 기업이 공시 예정이었던 ESG 데이터를 수집기관에 제출하면, 해당 데이터가 ESAP 플랫폼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되어 기업으로 하여금 ESG 정보 공개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SAP에는 앞으로 시행될 EU ESG 공시 기준인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외에도 EU 탄소노미(EU Taxonomy), EU 녹색채권 기준(EU Green Bond Standard) 등 EU 공시 의무 법안들에서 요구하는 ESG 데이터가 포함될 예정으로, 기업별 ESG 정보 비교 분석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6) 구제조치 마련

- 기업의 자체 운영 과정 또는 협력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킨 경우, 구제조치(Remediation)를 제공해야 합니다.
 - 구제조치란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기 이전의 상황 또는 최대한 가까운 상황으로 복구하기 위한 기업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협력사가 단독으로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킨 경우, 기업은 협력사에게 개선책을 마련해 주거나 해당 협력사가 구제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참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정적 인권 영향 구제조치 예시

구제조치	내용
합의 권고	-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구제조치 및 제도 개선 권고	- 진정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다음 사항을 권고 >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수사의뢰, 고발 및 징계 권고 등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의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 -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 -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 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

구제조치	내용
법률구조 요청	- 진정에 관한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음. 단,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음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 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권고 > 의료, 급식, 의복 등의 제공 >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기후 전환 계획

- EU 공급망 실사 지침을 적용 받는 기업은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전환 계획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 계획에는 3가지 목표와 4가지 행동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1년마다 업데이트 되어야 합니다.

목표

- ①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 ② 파리 협정에 따른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
- ③ 2050년까지 기후 중립 목표 달성

행동 계획

- ① 2030년, 2050년까지 5년 단위로 과학적 근거 기반의 기후변화 완화 목표 및 Scope 1, 2, 3 온실가스 배출의 절대 배출량 감축 목표 수립
- ② 기후변화 완화 목표 및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조치
- ③ 기후 전환 계획을 실행하는 투자 및 자금 조달에 대한 설명 및 정량화
- ④ 계획과 관련된 행정, 관리 및 감독 기관에 대한 설명

- EU는 기업의 절대적인 배출량 감축 목표, 탄소중립 목표 등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는 것보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의 행동 계획 및 조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업은 수립한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의 진척 사항과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조치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한 뒤, 기후 중립 달성을 위한 계획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4. EU 공급망 실사 지침과 각 회원국별 국내법 비교

- EU 내 다양한 국가들에서 EU 공급망 실사 지침과 유사한 국내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는 현재 공급망 실사법이 입법되어 시행 또는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는 현재 실사법 도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전반적으로 EU 국내법의 경우 동 지침 대비 실사 프로세스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낮은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실사 항목, 대상 기준(임직원 수, 기업의 소재지 등), 제재 수단 등은 국내법으로 입법되는 과정에서 개별 국가의 특성에 맞게 변경될 수 있으므로 EU 공급망 실사 지침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세부 변동 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EU 국가들의 공급망 실사법 입법 현황

실사 지침 주요 내용	요구사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주요 특이사항
실사 항목	- 인권 및 환경 - 기후 변화 대응	- 인권 및 환경	- 안전 및 환경	- 아동노동	
실사 대상 기업	- (EU 역내 기업) 직전 회계 연도 기준 ① 평균 임직원 1,000명 초과, 연간 전 세계 순 매출액이 4.5억 유로를 초과하는 일반 기업 ② 로열티 수익이 2,250만 유로 초과, 전 세계 순매출 액이 8,000만 유 로를 초과하는 로 열티 수익 기업 - (EU 역내 기업) 전전년도 회계연 도 기준 ① EU 역내 순매출 액 4.5억 유로 초 과 일반 기업 ② 로열티로 인한 수익이 2,250만 유로를 초과, EU 역내 순매출 액 8,000만 유로 초과 로열티 기업	① 독일 내 사 업장에 위 치해 있으며, ② 3,000명 이상의 근 로자 보유 기업	- 2년 연속 회계 연도 기준 ① 프랑스 내 본사가 있는 직간 접 자회사 ② 5,000 명 임직원 고용, 또는 - ① 위치와 관계없이 ② 임직원 10,000명 이상 고용 한 모든 회 사	① 네덜란드 무역 등록 부에 등록 된 모든 기 업	•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고, 네덜란드에 설립된 모든 회사는 실사 의무를 가짐. 모든 기업은 무역 등록부 (Trade Register) 에 실사 수행 선언 (Decla- ration) 제출 필요

실사 프로세스	① 정책 및 위험 관리 시스템 내 실사 통합 ② 실제·잠재적 부정적 영향 식별, 평가, 우선 순위화 ③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예방·완화, 실제 부정적 영향 종식·최소화 ④ 실제 부정적 영향의 복구 ⑤ 이해관계자 참여를 수행 ⑥ 통지 메커니즘과 고충처리 절차	-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 내부 책임 결정 - 위험 분석 수행 - 원칙 선언문의 제출 - 예방 조치 정착화 - 구제조치 강화 - 항소 절차 수립 - 실사 의무 이행 - 문서화 및 보고	- 식별, 분석 반영한 위험 매핑 - 자회사, 하청업체 또는 공급업체 정기적 평가 - 리스크 완화 및 방지를 위한 조치 - 대표 노동 조합 조직과 협의를 통한 체계 수립 - 시행 조치의 모니터링 및 평가	- 선언한 회사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 구입한 회사도 실사 수행 필요 - 'ILO-IOE' 지침 및 국내 행정 명령을 준수한 실사 요구	• 독일: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직접 및 간접 협력사를 모두 포함하여 실사 범위에 포함함. 그러나 독일 실사 법에서는 직접 협력사에 대한 실사 의무만을 부여하고 간접 협력사에 대해서는 위험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에만 실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실사 범위가 EU 공급망 실사 지침과 상이함 • 네덜란드: 공급망 내 아동노동 이슈 발생 시, 재발방지 행동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는 조항을 고려하여,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동노동의 리스크가 낮은 협력사를 선정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공시 및 보고	- 연례 보고서 자사 웹사이트에 게시	- 실사 의무 이행 보고서 작성 및 7년 이상 보관	- 이해관계자 및 이니셔티브 맥락에서 공시 필요	- 실사 결과 감독 기관에 제출	

제재	- 전세계 순 매출의 최소 5% 이상의 벌금 - 위반 사항을 공고문을 통해 공개 - 자연인 및 법인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책임 보장	- 공급, 용역 계약의 체결에 대한 참여 배제 - 최대 3년간 공공계약 수주 대상 제외 - 연평균 매출액 최대 2%의 벌금 - 독일 내 노동조합, 비정부기구에 소송 권한 부여	-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의무 이행에 대한 독촉이 가능함 - 3개월 내 요건 미 충족 시,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청구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 의무 미준수에 따른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의무 부과	- 불이행시 행정 처분 및 벌금 부과	• 프랑스: 실사 의무를 미 이행하여 시행을 독촉했으나 3개월 이후에도 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시, 개인 또는 단체가 기업에 상대로 법원에 실사 의무 이행 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 또한,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기업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신고 매커니즘 및 고충 처리 절차	- 실제 또는 잠재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제기 보장 - 개인 및 단체(개인 및 법인,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의 불만 제기 보장	- 내부 고발 절차 마련 - 최소 연1회 고충처리 제도 검토 필요	- 리스크 관련 정보 수집 체계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하에 설치	- 이해관계자는 규제 기관에 불만 제기 가능 - 회사에 불만 제기 후 6개월 이후에도 미해결 시, 감독 기관에서 처리 가능	

이 해 관 계 자 참 여	- 실사 과정 전반(정보 수집, 시정 조치, 계약 종료, 모니터링 지표 개발 등)에 걸친 이해관계자 협의 - 외부 전문가와 협의 가능		- 기업 이해관계자 및 지역 차원의 다중 이해관계자 참여 필요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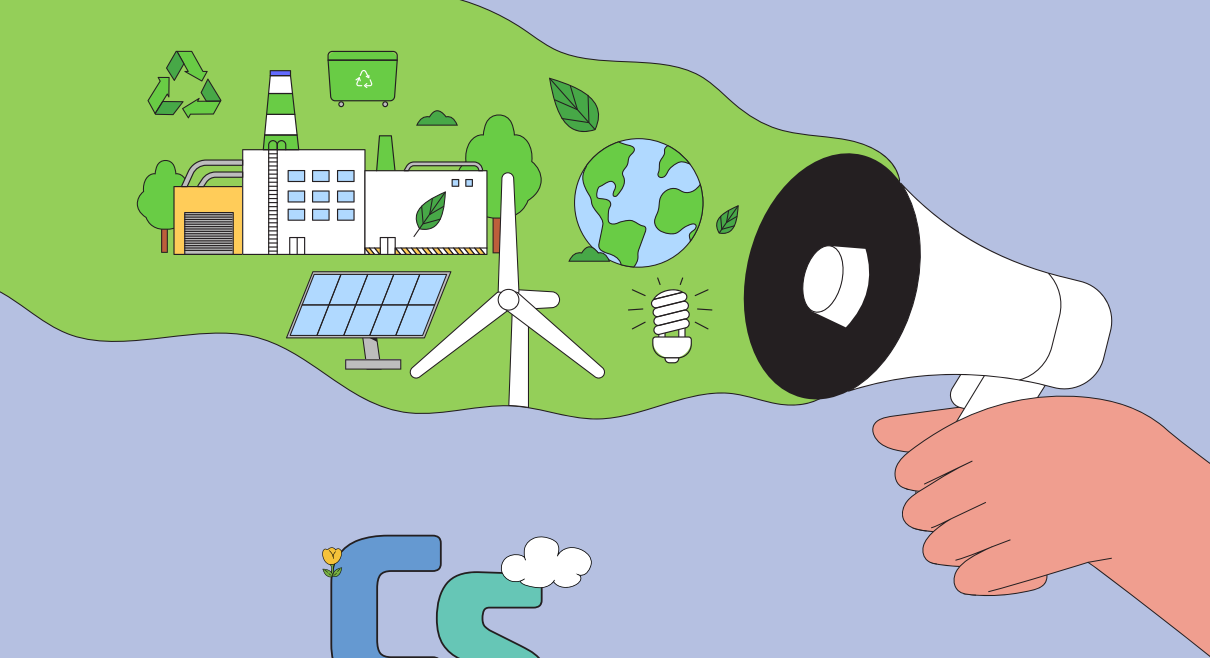
Part

3

EU 공급망 실사 지침 대응을 위한 자가 진단 Checklist

1. 자가 진단 Checklist 개발 배경
2. EU 공급망 실사 지침 요구사항 이행
자가 진단 Checklist
3. 인권 및 환경 실사 Checklist
 - 1) 인권 실사 Checklist
 - 2) 환경 실사 Checklist





CS DD 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Part 3

EU 공급망 실사 지침 대응을 위한 자가 진단 Checklist

part. 3

EU 공급망 실사 지침 대응을 위한 자가 진단 Checklist

1. 자가 진단 Checklist 개발 배경

-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부속서(Annex)는 인권과 환경에 대한 실사 항목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조약이나 기본권을 나열하는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기업이 동 지침에서 요구하는 실사 체계에 대한 자가 진단과 함께 실사 과정에서 점검이 필요한 인권과 환경 요소를 검토할 수 있도록 Checklist를 마련하였습니다.
- Checklist는 동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권 및 환경 규약을 기본 framework로 하여 ① 인권 및 환경 규약의 세부 내용, ② UNGC, UNGP 및 책임 있는 비즈니스를 위한 OECD 실사 가이드라인,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④ EcoVadis, RBA 등 공급망 관련 산업 이니셔티브 및 ⑤ 산업통상자원부의 「K-ESG 가이드라인」 및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구성되었습니다.

* 본 Checklist는 실무자들을 위한 참고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2. EU 공급망 실사 지침 요구사항 이행 자가 진단 Checklist

구분	진단 항목	응답
기업 정책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실사 내재화	EU 공급망 지침에서 요구한 인권 및 환경과 관련된 실사 지침(정책)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실사 지침에는 실사에 대한 회사의 접근 방식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실사 지침에는 자체 운영, 자회사 및 직·간접적인 비즈니스 파트너가 준수해야 하는 행동강령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구분	진단 항목	응답
기업 정책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실사 내재화	실사 지침에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행동강령 준수 여부 확인 및 실사 이행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실사 지침은 최소 24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까?	☐ 예 ☐ 아니오
	중대한 변경 사항(신규 사업/제품 출시, M&A 등) 발생 시, 실사 지침을 업데이트하는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실사 지침(정책) 제정 과정에서 공급망 실사 지침과 유사한 관련 법령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실사 지침의 이행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임직원, 고객, 협력사, 주주·투자자, 정부 등)를 참여시키고 있습니까?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복 또는 보상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인권 및 환경과 관련된 고충을 접수할 수 있는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고충처리제도는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사와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고충을 접수한 제보자에 대한 기밀이 보장됩니까?	☐ 예 ☐ 아니오
	고충을 접수한 제보자에 대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고충이 접수되면, 고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결과 통보, 조치 등 적절한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구분	진단 항목	응답
기업 정책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실사 내재화	고충을 접수한 제보자에게 적절한 후속 조치를 요청하거나 기업 대표와 논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고충에 대한 구제조치가 마련되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개선 조치가 취해집니까?	☐ 예 ☐ 아니오
부정적 영향의 식별 및 우선순위화	EU 공급망 실사 지침에서 요구하는 전체 실사 범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체 운영, 자회사 및 직·간접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를 포함한 기업의 전체 활동 사슬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중대한 변경 사항(신규 사업/제품 출시, M&A 등) 발생 또는 신규 공급업체 계약 시 활동 사슬을 업데이트합니까?	☐ 예 ☐ 아니오
	전체 활동 사슬 내의 실제·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활동 사슬 내에서 각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위치를 맵핑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식별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식별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심각성(Severity)과 발생가능성(Likelihood)의 관점에서 각 부정적 영향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우선순위의 평가 결과가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과정에 반영됩니까?	☐ 예 ☐ 아니오

구분	진단 항목	응답
실제·잠재적 부정적 영향 완화 및 종료	실사 지침의 이행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임직원, 고객, 협력사, 주주·투자자, 정부 등)를 참여시키고 있습니까?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주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이 자사만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킨 주체의 상황 및 해당 주체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완화를 위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개선 계획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질적 또는 양적 지표를 개발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완화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투자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협력사를 대상으로 계약상 보증을 체결하고 있습니까?	
	직접 협력사와 계약상 보증을 체결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직접 협력사와 계약상 보증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직접 협력사에게 하위 협력사와 동일한 계약상 보증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계약상 보증을 획득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활동을 문서화하여 기록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구분	진단 항목	응답
실제·잠재적 부정적 영향 완화 및 종료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예방 또는 완화 가능성 여부에 따라, 협력사와의 거래 관계를 조정하고 있습니까?	
	단기간에 부정적 영향을 예방 또는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사업 관계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 또는 완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협력사와의 거래 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협력사와의 거래를 종료하는 경우, 거래를 지속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의 크기와 거래 중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의 크기를 비교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부정적 영향에 대한 조치(계약상 보증 포함)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검증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검증 과정의 일환으로 산업 이니셔티브를 활용 하거나 제3자 검증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부정적 영향의 식별 및 우선순위화	실사 프로세스, 부정적 영향 완화 및 종료를 위해 시행되는 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적 영향이 실제로 완화 및 종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계획의 이행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실사 지침(정책) 및 실사 수행 프로세스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구분	진단 항목	응답
이해관계자 소통	연 1회 인권 및 환경 실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사의 웹사이트에 공시하고 있습니까?	
	실사 보고서는 해당 회원국에서 통용되는 언어 또는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영어로 작성 되었습니까?	☐ 예 ☐ 아니오
	EU 역외 소재 기업의 경우, 역내 공식 대표자 (대리인)을 지정하고 대리인의 연락처 정보를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구제조치 마련	활동 사슬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구제조치를 제공 하고 있습니까?	
	협력사 내에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개선책을 제공하거나 구제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기후 전환 계획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까?	
	전환 계획에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하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전환 계획에는 파리 협정에 따라 지구 온난화를 1.5°C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당사의 목표가 포함 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전환 계획에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 하겠다는 당사의 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2050년까지 5년 단위 의 Scope 1, 2, 3 절대 배출량 감축 목표를 수립 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구분	진단 항목	응답
기후 전환 계획	전환 계획 및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의 이행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전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전환 계획과 관련된 행정, 관리 및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이행 조치의 목표 달성도 및 조치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3. 인권 및 환경 실사 Checklist

1) 인권 실사 Checklist

구분	실사 항목	응답*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	안전보건 정책(안전보건 지침 포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정책은 자체 운영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임직원이 작업 안전 및 건강 사고와 관련된 우려 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신고 채널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구분	실사 항목	응답*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	임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인자(유해물질, 소음 등)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사업장 내 안정장구 및 안전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보호장구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사업장 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정기적으로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 위험성 평가: <사전 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시 - 공유·기록>의 순으로 수행되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	☐ 예 ☐ 아니오
	사업장 내 안전 관련 지침을 게시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국적에 맞는 언어로 작성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비를 부담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구분	실사 항목	응답*
차별 및 괴롭힘 금지	인권 정책 또는 인권 정책에 상응하는 지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권 정책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인권 정책 또는 인권 정책에 상응하는 지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권 정책은 괴롭힘, 성희롱, 신체적 차별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양성, 차별 및 괴롭힘 문제에 대한 인식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장애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직장 내 소수자/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아동노동 금지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고용 과정에서 근로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	☐ 예 ☐ 아니오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은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연소자가 건강이나 안전, 도덕의식에 해로운 일을 수행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을 통해 보장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은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연소자의 근무환경과 근무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구분	실사 항목	응답*
강제노동 금지	인권 정책 또는 인권 정책에 상응하는 지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권 정책은 모든 종류/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회사는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행동을 제약할 목적으로 신분증명서, 여행문서 등 중요한 개인문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근로조건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노사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한 소통 채널(타운홀 미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전체 임직원(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근로계약서 내,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까? * 필수 기재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 지급방법, 소정근로 시간, 주휴일과 공휴적용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 예 ☐ 아니오
	외국인 임직원에게 모국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근로자 임금산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은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성별 등 근로자의 조건과 관계 없이,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근로자들의 정규 및 초과근무 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근태관리시스템 등)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구분	실사 항목	응답*
근로조건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따른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 제공, 추가수당 제공 등	☐ 예 ☐ 아니오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유급휴가 기준에 따른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직장 내 소수자/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회사는 근로계약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침을 통해, 근로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까? * 노동조합 설립 허용, 노동조합 부재 시 독립적인 노동관련 문제를 토론헌 수 있는 대안적인 조치 허용 등	☐ 예 ☐ 아니오
	회사는 근로계약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침을 통해, 근로자가 노동조합 조직 또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회사는 단체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근로자 대표에게 단체협상에 필요한 정보(기업의 실적과 현황 등)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구분	실사 항목	응답*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한 해고를 해야 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노동자 대표가 단체협상을 요구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권이 있는 회사의 대표와 협상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개인정보 침해 금지	제3자가 회사에게 고객 및 임직원에 대한 개인 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인원을 대상으로 사전 동의를 획득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리스크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개인정보의 처리, 공유 및 보관에 대해, 해당 당사자로부터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환경 악화를 초래하는 행위 금지	사업장 주변의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환경개선을 위해 관계 법령을 고려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의 이행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환경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새로운 제품 또는 사업의 확장을 고려하는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임직원을 대상으로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대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구분	실사 항목	응답*
토지 및 자원 이용에 대한 지역사회 권리 보장	회사는 부지를 구매하기 이전에, 해당 부지의 법률상 소유자와 토지 소유권 이전에 따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회사는 부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민들에게 피해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회사는 타인의 지식을 이용하기 이전에, 해당 지식이 지적재산권 또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대상인지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회사는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하는 경우 소유자로부터 설명 있는 동의를 얻으며, 지적재산권 사용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기업 현황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실사 항목에 대한 응답 척도의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참고] 실사 항목에 대한 응답 척도 예시

‘안전보건 정책(안전보건 지침 포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정책은 자체 운영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문항에 대한 3단계 응답 척도

척도	상	중	하
평가 기준	안전보건 정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정책은 자체 임직원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안전보건 정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정책은 자체 임직원만을 포함하고 있음	안전보건 정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2) 환경 실사 Checklist

구분	실사 항목	응답*
환경경영 시스템 구축	전사가 추진하고 지향해야 할 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환경경영을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을 마련하고 있으며, 환경경영과 관련된 안건은 최고경영진에게까지 보고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신규 사업을 수행하기에 앞서, 해당 사업의 환경에 대한 리스크 평가(환경영향평가, 환경 인허가 획득 등)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관리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3)을 산정하고, 제3자를 통해 배출량을 검증받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에너지 소비량과 관련된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에너지 소비량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활동(공정 개선, 탄소 감축기술 도입, 재생에너지 사용 등)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물 관리	용수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용수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활동(빗물 수집 시스템, 폐수 재활용 시스템 등)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품질을 평가하고 있으며, 폐수 내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활동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구분	실사 항목	응답*
오염물질 관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NOx, SOx, PM 등)의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COD, BOD, SS 등)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정기적인 소음 및 악취 측정, 바이오필터 도입 등)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유해화학물질 관리	오존층 파괴물질 등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물질의 라벨을 지정하고 보관, 취급 및 운송에 대한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수은 첨가제품,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을 생산,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 해당 물질의 사용을 대체 및 제거하기 위해 뚜렷한 시점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보관 또는 사용 허가가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 해당 관할 당국으로부터 승인된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유해물질을 안전하게 취급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화평법, 화관법 또는 EU REACH 규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을 수행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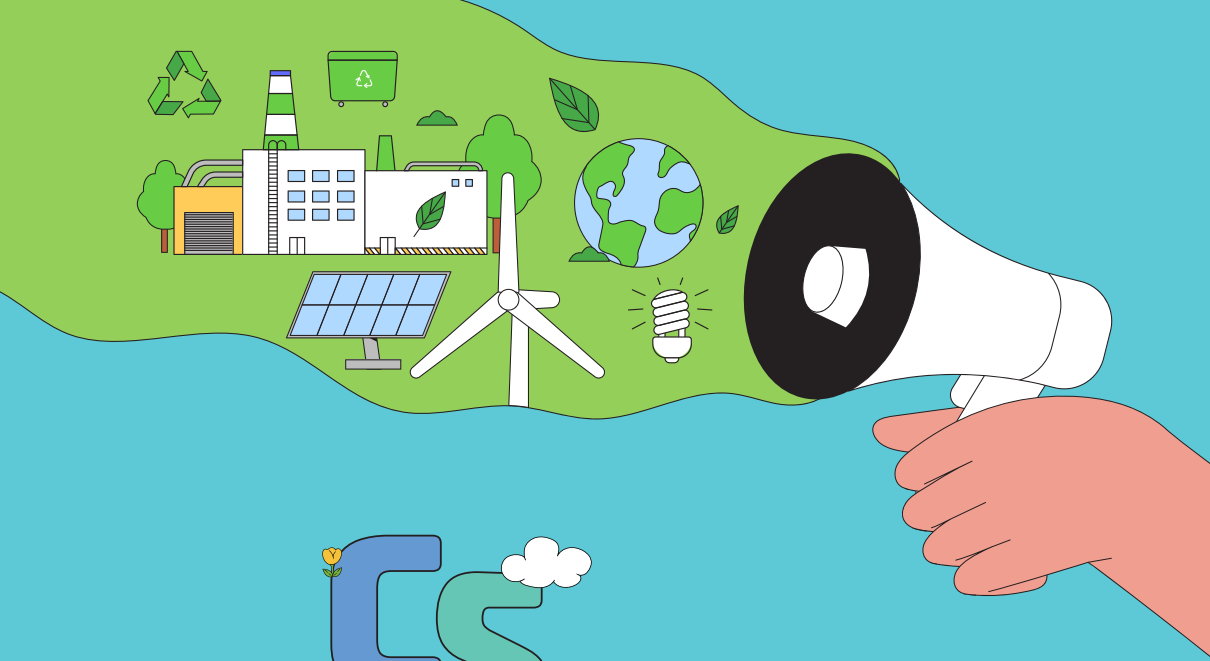
구분	실사 항목	응답*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화평법, 화관법 또는 EU REACH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선박을 운영하는 경우, 선박으로부터 기름 또는 유성혼합물, 유독성 액체물질, 하수에 대한 해양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되는 활동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폐기물 관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활동(폐기물 재활용 체계 구축 등)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사업장 내의 폐기물 흐름에 따른 폐기물 발생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현지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제3자 폐기물 관리/처리 회사를 통해 일반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바젤 협약에 비준한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입이 규제 되는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국의 사전 서면 동의를 획득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친환경 제품	친환경 제품 인증을 획득하였거나, 친환경 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제품의 원부자재 사용량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구분	실사 항목	응답*
생물다양성 보호	세계문화유산, 람사르습지 등 생물다양성에 민감한 지역 근처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 아니오
	야생 동식물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 수입허가서 또는 수출허가서를 획득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국 외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경우, 유전자원 제공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획득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자국 외 국가의 유전자원으로부터 유전자원을 획득하는 경우,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유전자변형생물체(LMOs)*를 생산하는 경우, LMOs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 생명공학에 의해 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LMOs, Living Modified Organisms)	☐ 예 ☐ 아니오

부록

1. EU 공급망 실사 지침 조항 표
2. EU 공급망 실사 지침 부속서
3. EU 공급망 실사 유관 법령 동향





CS DD 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1. EU 공급망 실사 지침 조항 표

조문	제목	본문과의 연계
제1조	Subject matter (대상)	Part 1-1. 도입 배경 및 목적
제2조	Scope (범위)	Part 1-3. 적용 대상 기업 및 적용 시점
제3조	Definitions (정의)	
제4조	Level of harmonisation (조화 수준)	Part 1-4. 책임 및 제재
제5조	Due diligence (실사)	Part 2-2. 실사 프로세스 정립
제6조	Due diligence support at a group level (그룹 차원에서의 실사 지원)	Part 2-2. 실사 프로세스 정립
제7조	Integrating due diligence into company policies and risk management systems (기업 정책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실사 통합)	Part 2-2. 실사 프로세스 정립
제8조	Identifying and assessing actual and potential adverse impacts (실제·잠재적 부정적 영향의 식별 및 평가)	Part 2-2. 실사 프로세스 정립
제9조	Prioritisation of identified actual and potential adverse impacts (실제·잠재적 부정적 영향의 우선순위화)	Part 2-2. 실사 프로세스 정립
제10조	Preventing potential adverse impacts (잠재적 부정적 영향 예방)	Part 2-2. 실사 프로세스 정립
제11조	Bringing actual adverse impacts to an end (실제적 부정적 영향 시정)	Part 2-2. 실사 프로세스 정립

조문	제목	본문과의 연계
제12조	Remediation of actual adverse impacts (실제적 부정적 영향 개선)	Part 2-2. 실사 프로세스 정립
제13조	Meaningful engagement with stakeholders (이해관계자의 의미 있는 참여)	Part 2-2. 실사 프로세스 정립
제14조	Notification mechanism and complaints procedure (통보 메커니즘 및 고충처리제도)	Part 2-2. 실사 프로세스 정립
제15조	Monitoring (모니터링)	Part 2-2. 실사 프로세스 정립
제16조	Communicating (공시)	Part 2-2. 실사 프로세스 정립
제17조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on the European single access point (유럽단일접속지점(ESAP))	Part 2-2. 실사 프로세스 정립
제18조	Model contractual clauses (계약상 보증 모델)	Part 2-2. 실사 프로세스 정립
제19조	Guidelines (가이드라인)	
제20조	Accompanying measures (수반되는 조치)	
제21조	Single helpdesk (단일 헬프데스크)	
제22조	Combating climate change (기후변화 대응)	Part 2-3. 기후 전환 계획

조문	제목	본문과의 연계
제23조	Authorised representative (공식 대리인 지정)	Part 2-2. 실사 프로세스 정립
제24조	Supervisory authorities (관할 당국)	
제25조	Powers of supervisory authorities (관할 당국의 권한)	
제26조	Substantiated concerns (입증된 우려)	
제27조	Penalties (처벌)	Part 1-4. 책임 및 제재
제28조	European Network of Supervisory Authorities (유럽 관할 당국 네트워크)	
제29조	Civil liability of companies and the right to full compensation (민사책임 및 보상)	Part 1-4. 책임 및 제재
제30조	Reporting of breaches and protection of reporting persons (위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31조	Public support, public procurement and public concessions (공공지원, 공공조달)	
제32조	Amendment to Directive (EU) 2019/1937 (지침(EU) 2019/1937 개정)	
제33조	Amendment to Regulation (EU) 2023/2859 (규정(EU) 2023/2859 개정)	

조문	제목	본문과의 연계
제34조	Exercise of the delegation (위임 권한)	
제35조	Committee procedure (위원회 절차)	
제36조	Review and reporting (검토 및 보고)	
제37조	Transposition (이행)	Part 1-3. 적용 대상 기업 및 적용 시점
제38조	Entry into force (발효)	
제39조	Addressees (수취인)	

2. EU 공급망 실사 지침 부속서

1) Part I

구분	순번	내용
국제 인권 조약에 포함된 권리 및 금지사항	1	생명권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제1항)
	2	고문 또는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금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3	자유와 안보에 대한 권리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제1항)
	4	개인의 사생활, 가정, 주거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 및 개인의 명예 또는 평판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 금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구분	순번	내용
국제 인권 조약에 포함된 권리 및 금지사항	5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간섭 금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6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누릴 권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
	7	근로자가 사택을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적절한 주거 환경을 제한하고, 의식주 및 적절한 위생 환경에 대한 접근 제한 금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
	8	아동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건강수준에 대한 권리 (아동권리협약 제24조), 교육받을 권리 (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적정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아동권리협약 제27조), 아동의 교육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일을 수행하거나, 발달 과정에 해가 될 우려가 있는 일을 수행하지 않을 권리 (아동권리협약 제32조),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고 납치, 판매 또는 국외의 다른 장소로 불법적으로 이동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아동권리협약 제34조 및 제35조)
	9	국제노동기구 최저연령협약(제138호) 제2조제4항 및 제4조, 제8조를 제외하고 의무교육이 완료되는 연령 미만의 아동에 대한 고용 금지
	10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18세 미만) 금지(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 협약(1999년 제182호) 제3조) (a) 아동의 판매 및 인신매매, 채무를 통한 속박, 농노제 등 모든 형태의 노예제 및 강제 징용을 포함한 강제 노동 (b) 아동을 성매매, 음란물 제작 또는 공연에 사용 및 조달, 제공 (c) 마약의 생산 및 밀매를 위해 아동을 불법적인 활동에 사용 및 조달, 제공 (d) 수행되는 작업의 상황에 따라 어린이의 건강, 안전 또는 도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

구분	순번	내용
국제 인권 조약에 포함된 권리 및 금지사항	11	강제노동협약 제2조제2항(1930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제3항(b)조 및 (c)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강제노동 및 의무노동 금지(강제노동협약 제2조제1항)
	12	노예제, 농노제, 지배 또는 억압의 형태와 유사한 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노예제 금지(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
	13	결사의 자유, 집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권리(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 및 제22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제98호) (a)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가능 (b) 노동조합의 결성, 이에 가입함에 있어 부당한 차별이나 보복 금지 (c) 당국의 간섭 없이 헌법과 규칙에 따라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 가능 (d) 파업권 및 단체교섭권
	14	고용 조건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고용에서의 불평등한 대우 금지 (국제노동기구 동등보수협약(제100호) 제2조 및 제3조, 국제노동기구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제111조) 제1조 및 제2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a) 동일한 노동에 대한 불평등한 보수의 지급 (b) 인종, 사회적 출신,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

구분	순번	내용
국제 인권 조약에 포함된 권리 및 금지사항	15	유해한 토양의 변화, 수질 및 대기오염, 유해한 배출, 과도한 물 소비, 토지 황폐화, 천연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 측정 가능한 환경 악화를 초래하는 행위 금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제1항,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 및 제12조) (a) 식품의 보존 및 생산을 위한 자연 기반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b)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 (c) 위생시설에 접근하기 어렵게 하거나 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d) 개인의 건강, 안전, 토지의 정상적인 사용 또는 합법적으로 취득한 소유물에 해를 끼치는 행위 (e) 인간의 복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생태계 서비스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
	16	토지 및 자원에 대한 개인, 집단 및 공동체의 권리와 생계수단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조 및 제27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조, 제2조 및 제11조)
인권 및 기본권에 관한 규약	1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3	아동권리협약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구분	순번	내용
인권 및 기본권에 관한 규약	4	국제노동기구의 핵심/기본 협약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s core/fundamental conventions) • 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No 87)) •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제98호)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No 98)) • 1930년 강제노동 협약(제29호) 및 2014년 의정서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and its 2014 Protocol) • 1957년 강제노동 폐지 협약(제105호) (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1957 (No 105)) • 1973년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138호) (Minimum Age Convention, 1973 (No 138)) • 1999년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 협약(제182호)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1999 (No 182)) • 1951년 동등보수협약(제100호)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 1951 (No 100)) • 1958년 차별(고용 및 직업) 협약(제111호)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 (No 111))

2) Part II

구분	순번	내용
환경 관련 규약에 포함된 금지 및 의무사항	1	생물다양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의무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0(b)조, 카타르헤나 의정서, 나고야 의정서)

구분	순번	내용
환경 관련 규약에 포함된 금지 및 의무사항	2	1973년 3월 3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록 I -III에 포함된 표본의 무허가 수입, 수출 및 도입(동일 협약 제III조, 제IV조 및 제V조)
	3	2013년 10월 10일 미나마타 협약 부속서 A Part I 에 기재된 수은 첨가제품의 제조 및 수출입 금지 (동일 협약 제4(1)조)
	4	미나마타 협약 부속서 B Part I 에 기재된 제조 공정에서 수은 또는 수은 화합물의 사용 금지 (동일 협약 제5(2)조)
	5	수은 폐기물의 불법 처리 금지 (미나마타 협약 제11조 제3항, EU규정 2017/852 제13조)
	6	2001년 5월 22일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POPs 협약) 부속서 A에 기재된 화학물질의 생산 및 사용 금지 (동일 협약 제3(1)조 point (a) 및 (i), EU규정 2019/1021)
	7	폐기물의 불법적인 취급, 수집, 보관 및 처리 금지 (POPs 협약 제6조제1항 point (d), (i) 및 (iii))
	8	1998년 9월 10일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에 대한 사전정보 동의절차(UNEP/PAO)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부속서III에 기재된 화학물질의 수출입 금지 및 사전정보동의절차에 따라 협약의 수출입 당사국 표시 (동일 협약 제10(1)조, 제11(1)조 point (b), 제11(2)조)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에 오존층을 고갈시키는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부속서 A, B, C, E에 기재된 물질의 불법적인 생산, 소비, 수입 및 수출을 금지 (동일 의정서 제4B조 및 관할 당국의 법률에 따른 허가 조항)

구분	순번	내용
환경 관련 규약에 포함된 금지 및 의무사항	10	유해 폐기물 또는 기타 폐기물의 수출 금지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 제1(1)조, 제1(2)조, EU규정 1013/2006) (a) 유해성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한 협약의 당사국 (바젤 협약 제4(1)조 point (b)) (b) 유해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입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은 수입국(바젤 협약 제4(1)조 point(c)) (c) 바젤 협약의 비당사국(바젤 협약 제4(5)조) (d)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되지 않은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이 수입되는 경우(바젤 협약 제4(8)조 전단)
	11	바젤 협약 부속서V에 기재된 국가에서 부속서V에 기재되지 않은 국가로의 수출 금지 (바젤 협약 제4A조, EU규정 1013/2006 제34조 및 제36조)
	12	바젤 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당사국의 유해 폐기물 및 그 밖의 폐기물 수입 금지 (바젤 협약 제4(5)조)
	13	1972년 11월 16일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세계유산 협약) 제2조에서 규정한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재산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의무 (세계유산협약 제5조 point (d) 및 관할 당국의 관련 법률)
	14	1971년 2월 2일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르 협약) 제1조에서 규정한 습지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의무 (람사르 협약 제4(1)조 및 해당 관할 당국의 관련 법률)

구분	순번	내용
환경 관련 규약에 포함된 금지 및 의무사항	15	1973년 11월 2일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방지 의무 (1978년 의정서(MARPOL 73/78)로 개정) (a) 해양으로 다음 물질 배출 금지 (i) MARPOL 73/78 부속서 I의 규정 1에서 정의하는 기름 또는 유성혼합물(MARPOL 73/78 부속서 I 규정 9-11) (ii) MARPOL 73/78 부속서 II의 규정 1(6)에서 정의하는 기름 또는 유독성 액체물질(MARPOL 73/78 부속서 II 규정 5-6) (iii) MARPOL 73/78 부속서 IV의 규정 1(3)에서 정의하는 하수(MARPOL 73/78 부속서 IV 규정 8-9) (b) MARPOL 73/78 부속서 III의 규정 1에서 정의하는 포장된 형태로 해상으로 운반되는 유해 물질에 의한 불법 오염 금 지(MARPOL 73/78 부속서 III 규정 1-7) (c) MARPOL 73/78 부속서 V의 규정 1에서 정의하는 선박의 쓰레기로 인한 불법 오염 금지(MARPOL 73/78 부속서 V 규정 3-6)
	16	투기로 인한 해양환경의 오염 방지, 저감 및 통제 의무 (1982년 12월 10일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210조 및 관할 당국의 관련 법률)

3. EU 공급망 실사 유관 법령 동향

집행규범명	구분	내용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발효 시기	2023.01.06
	대상 기업	- 임직원 500명 이상 EU 상장사 및 금융권 회사(은행, 보험사) - EU 규제시장 상장 기업 - EU 소재 대기업(다음 3가지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① 임직원 수 250명 이상, ② 연매출 5천만 유로 이상, ③ 총자산 2천 5백만 유로 이상) - EU 상장 중소기업(임직원 수 10명 이하 또는 매출이 2천만 유로 미만의 초소형 상장기업 제외) - 비EU 지배기업(다음 2가지 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EU 역내 매출액 1억 5천만 유로 이상, ② EU 역내 매출 액 4천만 유로 초과하는 지점 또는 상장중소기업 보유)
	요구 사항	기업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 조치가 자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공개
	실사 지침과의 연계성	- CSRD에 따라 지속가능성 보고 요건이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보고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실사 내용 공시 및 기후 전환 계획의 채택 의무로부터 면제 - EU 공급망 실사 지침과 CSRD는 상호 보완법임. CSRD는 기업의 ESG 투명성 공시에 집중,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올바른 ESG 이행을 위한 실제 조치를 규율함 - 기업들은 EU 공급망 실사 지침에 따른 실사 이행 후 CSRD에 나온 기준에 맞춰 공시하며, CSRD 비적용 기업은 EU 공급망 실사 지침에 맞춰 이행한 내용을 연례 보고서로 공개해야 함

집행규범명	구분	내용
강제노동 결부 제품 금지 규정 (Regulation on prohibiting products made with forced labour on the Union market)	발효 시기	2024.07(예정)
	대상 기업	원산지 및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역내·외 국가와 기업에 해당
	요구 사항	강제노동 결부 상품에 대한 EU 역내 출하·판매(전자상거래 포함) 및 EU를 통한 역외 수출 금지
	실사 지침과의 연계성	- EU 공급망 실사 지침에 강제노동 관련 규정이 있으나, 수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음 - EU 공급망 실사로 실사 체계 수립 시, 강제노동 규정에 유용하게 작용될 전망 - EU 공급망 실사의 직접 적용 대상은 대기업이지만, 강제노동 결부 제품 금지 규정의 경우 중소기업도 직접 적용 대상에 포함됨
EU 배터리 규정 (New Battery Regulation)	발효 시기	2023.08.17
	대상 기업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역내·외 기업에 해당
	요구 사항	EU 역내 유통되는 모든 배터리(이동식 배터리, SLI 배터 리, LMT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산업용 배터리)의 소싱, 제조, 사용 및 재활용 등 제품의 전 수명주기 모니터링
	실사 지침과의 연계성	- 배터리 제조·폐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인 권 관련 영향을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해 공급망 실사 의무를 부과하며, 역내 배터리 출시자는 실사 정책 수립 후 제3자 인증기관을 통해 검증 필요 - EU 공급망 실사 지침에는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 추적 시스템 구축과 위험관리 계획이 포함되며, 원자재 정보, 공급 기업, 원산지, 물량 정보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집행규범명	구분	내용
산림 전용 방지 규정 (Deforestation-free products Regulation)	발효 시기	2023.06.29
	대상 기업	비중소기업 운영자(규제 품목 제품을 시장에 출시 및 수출한 주체) 및 거래자(운영자를 제외한 공급망 참여 주체), 중소기업
	요구 사항	소,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의 7개 품목을 포함·공급·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유럽 시장에 출시하거나 공급하는 행위, 또는 유럽연합회원국에서 역외로 수출하는 행위 금지
	실사 지침과의 연계성	-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림 훼손 영향이 상당한 제품에 대해 공급망 실사 의무를 부과함
분쟁 광물 규정 (Conflict Minerals Regulation)	발효 시기	2017.05.17
	대상 기업	분쟁광물을 사용한 제품을 제조하는 EU 상장기업
	요구 사항	EU에 반입되는 주석, 텅스텐, 금 등 모든 광물은 OECD 책임광물 기준을 준수하고 실사를 실시하며, 분쟁광물 외 코발트, 구리, 납, 니켈, 아연 등 실사 기준을 연차보고서로 공개
	실사 지침과의 연계성	-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분쟁 자금 조달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역내 수입기업에 실사 의무를 부과함 - 광물 수입기업은 공급망 평가를 통해 광물 구매처를 식별해야 하며, 분쟁 지역 광물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리스크를 제거 또는 최소화하고 연례 보고서를 통해 기업이 수행한 실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해야 함



대한상공회의소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EU 수출기업을 위한 공급망 실사 지침

GUIDE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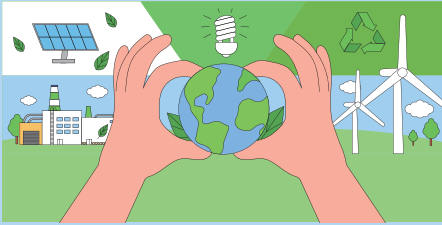


발행일 2024. 9.
발행처 대한상공회의소 ESG경영실
EY 대표 문의처 https://www.ey.com/ko_kr
ey.esg@kr.ey.com
02-3787-6600
디자인·인쇄 넥스큐브
02-3446-6267

이 책의 저작권은 대한상공회의소와 EY한영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대한상공회의소와 EY한영의 허락 없이는 무단으로 실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본 보고서는 FSCTM 인증을 받은 친환경용지에 콩기름 잉크로 인쇄되었습니다.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대한상공회의소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